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청렴 시책 추진 사례

2025. 05.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창업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원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지속적 설립

- (배경) 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및 기관 내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 (현황) '25년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10개 및 연구소기업 7개 운영, 예비 창업자 3명 창업 준비 중

○ 기업 창업 분야의 청렴도 제고 필요

- (추진 필요성) '23년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에서 기업 창업 분야를 부패 취약분야로 분석

<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 중 창업 분야 분석 내용 >

○ (창업기업 증가) 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및 기관 내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 추세,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 관리 필요성 도출 됨.

- '20년 2개사, '21년 3개사, '22년 4개사 신규 설립
- '23년 현재 9개의 연구원 창업기업, 8개의 연구소기업 운영중이며, '23년 4명의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 중

< 창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내부환경	S • 공공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증대 • 신규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에 직접 기여 • 연구자의 성취욕 증진	W • 창업자 개인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 • 휴·겸직 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구체적 내부 관리 기준 부재 •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유출 대비 등 보안 시책 미비	T • 이해충돌방지법, 부정경쟁방지·영업 비밀 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강화 • 창업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
	O • 기술창업 활성화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 • 금융, 세제, 정부 사업 등 정부 지원책 강화 • 벤처·창업에 관한 투자 활성화		

☞ 이에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연구원의 지원사항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음

□ 주요 추진내용

○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청렴도 제고를 추구하기 위한 연구원 창업 규정 전반 개정

- (근거) '24년 8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연구원 창업 규정 가이드 라인(안)」 개정
- (추진내용) 창업 규정에 가이드 라인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음

< 반부패 관련 표준연 창업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및 의의 >

조항	개정 내용	의의
제2조 (정의)	○ 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창업기업 정의 변경	○ 각 용어에 대한 정의 명료화 - 창업, 창업기업: 설립 근거 법률 명시 - 창업자: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원도 책임 있는 역할 수행자로 해석
제8조 (창업신청)	○ 창업신청 시 제출 서류에 창업 규정 준수 및 윤리 이행 서약서 추가	○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청렴도 및 책임의식 제고
제9조 (창업승인)	○ 심의회 심의사항에 연구원 지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추가	○ 연구원 지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통해 창업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
제10조 (창업자 책임)	○ 이해충돌방지 준수 조항 추가	○ 휴·겸직 및 창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도록 함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

제12조 (겸/휴직)	○ 휴겸직 심의위 외부전문가 1인 참여	○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로 객관성 확보
제14조 (지원범위)	○ 기업 설립 전 예비창업자 지원은 연구원 부담 ○ 창업기업 지원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원칙	○ 기업 설립 전·후 지원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청렴도 제고
제15조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 창업대상 기술 무상 사용 및 전용실시권 내용 삭제	○ 창업기업이 기술 사용 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연구자가 동일 기술로 창업·경쟁할 기회를 부여
제17조 (지원 중단 및 취소)	○ 중단 및 취소에 대한 사항 추가 - 설립 기한 변경 (3개월 → 6개월) - 명예 실추에 대한 텍스트 정리 - 폐업 또는 기술료의 미납 시	○ 창업자 및 창업기업 의무 강화
제18조 (사후관리 등)	○ 창업기업 설립 후 증빙자료 - 제출 기한 변경 (3개월 → 6개월) ○ 외부 요구자료 대응 협조	○ 창업기업 경영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서약서 마련

- (근거) 창업 규정 제8조 개정 :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서약서 제출 필요
- (추진내용) 기존 창업신청서 및 겸직 서약서에 담지 못했던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의무**를 새로 마련한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서약서**에 명시하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세부 내용은 증빙 목록 참고)

○ 사후관리 항목 추가 및 반부패 모니터링 실시

- (목적)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기업활동 모니터링, 기술유출 및 무단출원 방지
- (추진내용)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점검 항목에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보안 의식과 보안대책, 직무발명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

< 사후관리 실시 및 창업기업 모니터링 내역 >

40. 기술이전계약 후, 관련된 기술내용을 연구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실시한 기술유출이 있었습니까?	41. 기술이전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42. 기술이전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3.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44. 기술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45. 귀사는 기술보유를 위해 제3자(외부 및 협력업체 등)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46. 귀사는 기술유출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47. 기술이전을 통해 승격하게 된 연구원의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연구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기술실시한 기술유출이 있었습니까?	48. 기술이전계약 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기술실시한 기술유출이 있었습니까?	49. 후속기술(개량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판매 등 활동을 위해서는 후속 기술(개량기술)의 연구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50. 귀사가 종업원 영도하거나 인수 합병된 경우, 연구원에서는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1. 귀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보장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연구원에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2. 기술이전계약의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연구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형태의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파괴하여야 하며, 그 목록과 증명자료를 연구원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3. 귀사의 직원을 해외 기관에서 채용할 때, 기술 유출로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미보유	비밀유지서약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미보유	비밀유지서약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미보유	비밀유지서약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보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 교육 실시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보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 교육 실시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보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 교육 실시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보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 교육 실시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보안규정 보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고 있음	관리 방안 미보유 및 비밀유지서약서 미제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직원 교육 실시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 창업 활성화와 청렴도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
 - (장애요인) 규정 완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규정 강화를 통한 청렴도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극복방안) 휴·겸직 기간 연장(6→7년), 창업 전 기관 지원 강화 등 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청렴도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와 청렴도 제고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음

□ 주요 추진성과 : 규정 개정 및 사후관리를 통한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

- 창업 규정 개정 완료
 - (규정개정) 창업 및 이후 기업활동에서 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원의 지원 사항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창업 규정 개정 완료
 - (서약서 마련)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가 청렴한 창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서약하도록 하는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 마련
- 창업기업 대상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완료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창업기업의 매출액, 채용/퇴직 등 기업활동,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직무발명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청렴한 창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정례화

□ 우수(미흡) 사례 선정 사유

- 창업 규정의 개정으로 창업 활동의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임
- 매년 정례적으로 수행되던 사후관리에 일부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렴한 창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임

해당사례가 ‘22년도~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과제 제출 년도 *(22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22년 □	’23년 ■	’24년 □
’22년도~’24년도 미평가기관 해당(자율과제 제출)	예 □	아니오 ■	

별첨

증빙 자료 목록

□ 증빙 목록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

본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창업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창업자(창업참여자) 및 창업기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창업자(창업참여자) 또는 창업기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에서 창업지원을 중단 또는 창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2) 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 3) 창업기업이 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 4)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 5) 경영실패 이외의 기타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 6) 연구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한 경우
 - 7) 관련 서류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 8)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 9) 기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10) 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은 겸직 기간 중 기관 예산 또는 연구원 인력이나 장비를 창업 관련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승인받은 지원 사항 이외에 연구원 내 시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예비창업 기간, 휴직 및 겸직 기간 중 발생한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직무발명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을 출원 전에 즉시 연구원에 신고하여 연구원의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또한 퇴직이나 전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으로 발명한 지식재산권 또한 출원 전에 연구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직무발명으로 판단된 지식재산권의 지분율은 연구원과의 협의에 따르겠습니다.
6. 본인은 휴직 및 겸직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7. 본인은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분쟁, 창업 승인 또는 지원의 중단·취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창업(참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